

핑크카드 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인 핑크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 핑크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핑크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핑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② "핑크카드"란 핑크머니로만 충전되는 기명식 선불카드로서 그 카드에 기록된 잔액범위 내에서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 ③ "선불카드"란 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원 등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④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⑤ "핑크머니"란 주식회사 핑크가 발행 당시 미리 공지한 내용으로 위 회사가 운영하는 핑크앱, 웹사이트 및 가맹점,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여 회원의 주식회사 핑크 계정에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⑥ "핑크앱"이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되어 주식회사 핑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⑦ "충전"이란 핑크카드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내에서 회원이 제9조 제2항의 방식에 따라 이 약관 및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⑧ "핑크카드의 유효기한"이란 카드사로부터 핑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⑨ "소멸시효기간"이란 회원이 카드사에 대하여 핑크카드상 충전된 금액의 사용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 2 장 핀카드의 발급 및 이용 등

제3조(핀카드의 발급)

- ① 회원이 핀카드의 발급을 희망할 경우 핀앱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핀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핀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제작비용을 배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핀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핀카드를 발급(재발급)받는 경우 카드사는 핀카드의 발급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핀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부가서비스, 이용한도,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명 및 거래유형에 관한 목록, 인터넷 사용등록·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4조(핀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사는 핀카드 발급 시 전산 관리 및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하여 핀카드 표면에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핀카드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핀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핀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③ 회원이 소지한 핀카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핀카드 잔액에 대해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동종의 카드(동종의 카드가 없을 경우, 동종의 유사한 카드)로 교체 발급받거나, 잔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핀카드를 교체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⑤ 카드사는 핀카드 잔액이 존재하는 회원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교체발급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사가 회원의 휴대폰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핀카드와 소멸시효)

- ① 기사용 핀카드의 잔액은 최종사용월로부터 미사용 핀카드의 잔액은 판매월(또는 충전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②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한 기부금 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5만원 이상의 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기 1개월 전까지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기부처 등 기부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E-MAIL), 전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부예정 통지를 한 카드사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회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핑크카드의 이용)

- ① 핑크카드는 일시불 구매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이 핑크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국내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충전된 핑크카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핑크카드 사용 시 카드사는 해당 핑크카드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차감합니다.
- ④ 핑크카드 회원은 핑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핑크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핑크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핑크카드의 이용 제한)

- ① 핑크카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의 결제거부·제한 등으로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가맹점이 핑크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 및 대상 거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핑크카드 특성상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무승인 거래(항공권 내 구매 등) 및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철도예매, 항공권 예매)의 경우에는 회원의 핑크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이 제한된 가맹점을 고지합니다.
-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핑크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카드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핑크카드 회원가입 신청 또는 핑크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დი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해당 카드의 충전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5.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비밀번호, CVC번호를 3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6. 기타 카드 위조·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핑크카드가 전항에 따라 이용 정지된 경우, 카드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핑크앱의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항 제2, 4, 5, 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즉시 고지)
또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 사유발생 당일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⑤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핀크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핀크앱 등을 통하여 핀크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핀크카드의 환급)

- ① 카드사는 회원이 핀크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핀크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핀크머니로 재적립됩니다.
- ③ 회원이 핀크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취소금액만큼 핀크머니로 재적립 됩니다.

제9조(핀크카드의 충전)

- ① 핀크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발행권면금액)의 한도는 최고 50만원(잔액기준)이며, 1회 또는 월별 충전 및 사용한도는 별도의 상품안내장을 통하여 안내 드립니다.
- ② 충전은 핀크앱에서 핀크머니로만 가능합니다. 회원이 가맹점에서 핀크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사는 핀크카드의 충전잔액을 확인하고 충전잔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주식회사 핀크에게 핀크머니로 핀크카드 잔액을 충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핀크머니 잔액이 충전요청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주식회사 핀크는 회원이 연결한 핀크머니 충전계좌에서 핀크머니를 충전한 후 핀크카드 충전요청금액을 핀크머니로 결제 합니다.
- ③ 카드사는 핀크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핀크카드의 잔액 확인)

핀크카드의 잔액은 핀크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11조(핀크카드의 소득공제)

회원은 핀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공제 등록 절차없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환불금액
2.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능한 핀크카드 이용금액

제12조(핀크카드의 환불)

- ①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핀크앱 등을 통해 해당 핀크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환불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여 드리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 등을 확인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핀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핀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핀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제13조(핀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핀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된 핀카드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정지하며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핀카드의 분실·도난 시 보상하도록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시 분실·도난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된 카드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핀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5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핀카드의 미서명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핀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⑥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핀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핀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핀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핀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핀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핀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핀크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카드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변경사항의 통지)

- ① 핀크카드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16조(이용약관의 효력)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핀크앱에 게시하고 핀크카드의 발급 시 이메일, FAX 전송,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등의 방법으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17조(이용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앓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앓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약관에서 정하지 앓니한 사항)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약관 위반 시의 책임, 관할법원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앓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19조(핀크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발급받은 핀크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핀크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원은 핀크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핀크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